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연 월 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마약류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2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함(제1조, 제3조)

나.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외의 실태조사 방법을 다양화함(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제51조의3”을 “같은 법 제51조의4”로,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을 “및 마약류 중독·치료 등에 대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의3”을 “법 제51조의4”로, “중독자”를 “중독·치료 등”으로,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방문조사, 자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의3”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u>같은 법 제51 조의3</u>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u>같은 법 제51 조의4</u> ----- ----- ----- <u>및 마약류 중독 · 치료 등에 대한</u> ----- -----.
제2조 (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u>법 제 51조의3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 <u>법 제5 1조의4</u> ----- <u>중독 · 치료 등</u> ----- <u>방문조사, 자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u>
1. <u>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 보호기관에 대한 방문조사</u>	<u><삭 제></u>
2. <u>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u>	<u><삭 제></u>
② <u>법 제51조의3에 따른 실태조 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u>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